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3. 7. 12.

사회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6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김길자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7월 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(2013년 7월 5일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 설명자 : 김길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가 신설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원대상 확대 신설
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(안 제2조제5호)
 - 실업, 화재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(안 제2조제6호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태선)

-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따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.
- 주요내용을 보면
지원대상을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, 실업, 화재, 사고, 사업 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에게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함.
- 저소득대상자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함으로써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주민과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민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, 그 밖에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제명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한 것임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2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3년 6월 일

발 의 자 : 김길자의원 외 명

1. 제안이유

생활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 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」를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나. 지원대상 확대 신설

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(안 제2조제5호)
- 실업, 화재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(안 제2조제6호)

다.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정비

3. 개 정 안 : “별 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,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사회복지과, 총무과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13. 6. 20 ~ 6. 25) : 의견 없음

3) 타구 조례 제정현황 : 양천구 외 12개구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의한”을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등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”을 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, “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”를 “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”으로, “금전 또는 물품”을 “금전 또는 물품(이하 “금품”이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”을 “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에 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사회복지사업법”을 “ 「사회복지사업법」 ”으로, “받는 자”를 “받는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”을 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

따른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”를 “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, 제7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,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

6. 실업, 화재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법령에 따라”로, “되는 자”를 “되는 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”를 “「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」에 따라”로, “외의 자”를 “외의 사람”으로, “아니된다”를 “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자를”을 “사람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p>4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</p>	<p>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----- -----</p>
<p><신 설></p>	<p>5. 「한부모가족 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</p>
<p><신 설></p>	<p>6. 실업, 화재, 사고, 사업실패,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</p>
<p>5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</p>	<p>7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3조(지원내용)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3조(지원내용) ----- ----- 각 호-----. ----- 법령에 따라 ----- ----- 되는 사람----- -----.</p>
<p>1. ~ 5. (생 략)</p>	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6. 기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6. 그 밖에 ----- -----</p>
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,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.</p>	<p>제4조(지원대상자의 결정) ①----- ----- - 그 밖에 ----- -----.</p>
<p>②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</p>	<p>② -----</p>

<p>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 범위-----.</p>
<p>③ (생략)</p>	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④ <u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</u> 의하여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자 <u>외의 자</u>에게 지원하여서는 <u>아니 된다</u>.</p>	<p>④ 「<u>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</u>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<u>외의 사람</u>----- <u>아니 된다</u>.</p>
<p>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<u>자</u>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.</p>	<p>⑤ ----- ----- <u>사람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</p>	<p>⑥ ----- <u>따라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⑦ <u>기타</u>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⑦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시행규칙) ----- ----- <u>그 밖에</u> ----- -----.</p>